

농 지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1. 3.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1. 개정이유

농지원부의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어 하나의 원부상에 주소가 다른 농지가 다수일 경우 농지원부 정비·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관리주체를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농지원부를 정비·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 변경(안 제55조 개정)

○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 (개정안)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

나.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 거주지 이동에 따른 농지원부 첨부·이송, 사본편철 보존에 대한 사항 변경(안 제56조제4항 개정) 및 삭제(안 제56조제5항 삭제)

다. 농지원부 작성기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58호서식 개정)

○ 농지 필지별 작성, 농지관리 필요정보(농지취득자격증명 등)를 추가하고 재배작물, 세대원 정보 등 효용성이 낮은 항목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④ 시·구·읍·면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더 이상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원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농지원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 · 비치)</u> <u>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u> <u>·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u> <u>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u> <u>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u> <u>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u> <u>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u> <u>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u> <u>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u> <u>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하</u> <u>다) ·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u> <u>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하</u> <u>다) · 읍 또는 면(이하 “시 · 구</u> <u>· 읍 · 면”이라 한다)의 관할구</u> <u>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u> <u>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u>	<u>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 · 비치)</u> <u>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u> <u>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지 소</u> <u>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비</u> <u>치하여야 한다.</u>
<u>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u> <u>~ ③ (생 략)</u> <u>④시 · 구 · 읍 · 면장은 관할구</u> <u>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u> <u>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u> <u>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u> <u>의 시 · 구 · 읍 · 면장에게 주민</u> <u>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u>	<u>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u> <u>~ ③ (현행과 같음)</u> <u>④ 시 · 구 · 읍 · 면장은 법 제34</u> <u>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의</u> <u>절차를 거쳐 더 이상 농지가 아</u> <u>니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농</u> <u>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u> <u>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u>

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삭 제>

농 지 원 부

장번호: 1/2

고 유 번 호			XXXXXXXXXX-X-XXXX-XXXX-XX(일련번호)											발급번호		XXXXXXXX-XXXXXX-XXXXXX			
소 재 지			지번	지적공부			농지구분		현황(실제)		소 유 사 항								
시·군	읍·면	리·동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지목	면적 (㎡)	소유 일련 번호	등기 원인	원인 일자 (등기신청 접수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 (법인)번호	주소	지분 면적 (㎡)	이용 현황	경작 현황

※ 기재사항 안내: 소재지번 및 지적공부, 지분사항은 토지(임야)대장의 토지기본사항, 등기원인 및 취득일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임대차 현황

소유 일련 번호	임대차 사항							관리기관 확인		
	구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면적 (㎡)	임대료 (원)	임차기간	등록기관	담당자	확인일

※ ‘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농 지 원 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일련 번호	신청인	취득 목적	신청 면적	발급일	조사기관	조사일	이용현황	경작현황	처분대상 여부	구분	허가·신고· 협의 기관	허가 (협의·신고) 일자	전용목적	전용면적 (㎡)

※ 위 사항은 최근 00연도 사항이 기록됩니다.

위와 같이 농지원부를 발급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년 월 일

시장 · 구청장 · 읍장 · 면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42